

2022년 5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(임시회) 서면심의 결과

일 시 : 2022년 5월 3일(화)

서면심의 위원 : 8명

○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: 김수정, 김원규, 손영주, 이승한, 이암혜경, 최승철

○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: 김형욱, 노승현

상정안건 및 심의결과

의안번호	사건번호	의안명	심의결과
22-44 <이의>	22이의-7,9,10 (병합)	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(21산청-115) 권고 결정 이의	이유없음 (기각)

주요 심의 내용(위원 의견)

○ 이의신청인들(원결정 피신청인들)의 주장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객관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고, 원결정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‘신청인의 구제신청을 전부 인정하는 판정’을 하였고 신청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‘불송치(혐의없음)’ 결정한 사실로 볼 때 신청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질책과 징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움.

○ 원사건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진술 및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기각 결정함. 끝.